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총액인건비 기준정원에 부합하는 정원조정, 임용령 개정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, 사회복지인력 확충지침에 따른 정원증원 및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정원 등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증감 내용 (정원총수 변동없음)

- 총액인건비제도 기준정원 조정 △4명(행정△1, 지도△1, 기능△2)
-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(기능△2, 행정+2)
- 사회복지인력 확충 +4명

나. 기관별 정원 조정 현황

구분	합계	집행기관					의회
		소계	분청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	
개정 전	583	571	275	130	35	131	12
개정 후	583	571	270	130	34	137	12
증감	-	-	△5	-	△1	+6	-

다. 직급별 정원 조정 현황

구분	합계	정무직	일반직							연구직	지도직	별정직	기능직
			소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			
개정 전	583	1	460	4	24	119	142	110	61	2	20	16	84
개정 후	583	1	465	4	24	119	142	111	65	2	19	16	80
증감	-	-	+5	-	-	-	-	+1	+4	-	△1	-	△4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

다. 관계부처 협의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11.10.26.~2011.11.15.(21일간), 제출의견 1건

- 제출자 :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

- 제출의견 : 지도직 감축 반대

① 농업인의 이익과 농업군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지도직렬은 현재보다 더 증원되고 전문화를 위한 여건조성이 필요한 시기임.

② 현재 농촌지도공무원 20명중 13명은 최고급 인력으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민과 동고동락하며 평창군 농정발전과 농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지도직 감원계획을 재고 바람.

- 의견 반영 여부 : 미반영

①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에 부합하는 정원감축(△4명)은 불가피한 선택이며, 정원감축 시 주요 감안사항으로 직렬·직급별 결원여부,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 현황, 기능 쇠퇴분야 여부 등이 주된 고려 기준에 지도직 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음.

② 금년 중 정원조례를 개정하여야만 익년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, 사회복지직 채용이 가능함에 따라, 금회 정원조례 개정(정원감축)은 불가피한 상황임.

③ 총액인건비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향후 지도직 증원을 적극 검토하겠음.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초과되는 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3]

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583	583				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465	465				
4급	2	1		1		
4~5급	2	2				
5급	24	9	2	4	1	8
6급 이하	437	437				
연구직 계	2	2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2	2				
지도직 계	19	19				
지도관	1			1		
지도사	18	18				
별정직 계	16	16				
6급상당 이하	16	16				
기능직 계	80	80				
기능6급 이하	80	80				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원 조정(부서, 직렬 등)
- 단,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음.(기존 583명 ⇒ 변경 583명)

2. 미첨부 사유

가. 평창군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음.(기존 583명 ⇒ 변경 583명)

나. 임용령(대통령령) 개정에 따른 기능사무직렬의 일반직전환

【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】

제5조(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)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는 경우.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 과장 이상진
연락처	(033) 330 -2234

관계법령 발취

“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(생략)

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~3.(생략)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(생략)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~⑤ (생략)